

2009. 10. 16.

수 신 : 제천시의회 의장

제 목 :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발의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불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불 임 : 1. 발의의원 서명서 1부.

2.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1부. 끝.

발의자 : 이정임 의원 (서명 또는 날인)

의 4인

본 결의장	총장	결재	부의장
점주일자 2009. 10. 16 자 4월 11호	별 호 246	(공 관 으 로)	총장 <i>이정임</i>
국회고 제천시의회	승진호	답 달	<i>이정임</i>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안발의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이정일	이정일	
26. 07. 26		
이정일	6월 26일	
조덕희	조덕희	
劉永和	6월 26일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384
------	------

발의연월일 : 2009. 10. 16.

발 의 자 : 이 정 임 의원외 4인

1. 제안이유

-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해온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 생활을 영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 여가복지 시설인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 경로당에 대한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경로당운영비등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 보교환, 여가활동 및 공동일자리 지원등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경로당 운영비등 지원대상 경로당을 규정함 (안 제2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신고된 경로당
- 시장의 경로당 운영 실태 조사와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안 제3조)
- 경로당 시설 운영비, 냉·난방비, 시설 환경개선비등의 경로당 지원범위를 규정함, 특히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 근거와 사유를 규정함(안 제5조).
-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시장의 프로그램 개발·지원 책무를 규정함 (안 제6조)
- 여가시간을 생산적인 소득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 일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3. 의견수렴

- 방 법 :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재
- 기 간 : 2009. 9. 9 ~ 9. 29(20일간)
- 의견제출
 - 제출자 : (사)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장(중앙로2가 26-1번지)
-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 : 별첨

4.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제47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붙 임 :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1부. 끝.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의하여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된 경로당 또는 시장이 직접 설치한 경로당으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비등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비
4.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5.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대한노인회 시지회장과 각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지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보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